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 및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65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e-Asia 지식협력기금 및 아시아개발기금에 2,354만불 및 287억3천만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 및 지속가능인프라기금 등에 631만불,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 및 빈곤감축기금 등에 800만불 및 5억원, 아프리카개발은행에 1,200만불 등 총 1억 8천294만불 및 297억 3천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04. 00. ~ 05. 0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2호 및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 기금에 출연	533만 미합중국달러
43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출연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2에 제113호부터 11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11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3천400만 미합중국달러
11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229만 미합중국달러
11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5천800만 미합중국달러
11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11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출연	375만 미합중국달러
11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출연	5억원

별표 4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5에 제37호 및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2천354만 미합중국달러
38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287억3천만원

별표 7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10에 제46호부터 제4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4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4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4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31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12에 제28호부터 제 3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29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30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기금에 출연	5억원

별표 1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 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55만 미합중국 달러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15 - 8725